

국제행사, 자치단체 광고물 정비재원 마련을 위한

옥외광고사업

운영 및 수입 배분



추진근거

■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 제4항, 제11조의4 제4항

■ 「동법 시행령」 제30조 제2항

※ 광고물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마련

옥외광고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

추진절차



※ 사업자 선정 :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“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 가격낙찰방식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

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

배분비율

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 /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/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(65%), 지자체/ 센터 (35%)

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운영

옥외광고 정책위원회 개최

기금조성용옥외광고사업 기본계획및설치특례 심의승인('08.12.~'09.8., 3회)

옥외광고사업관리규정 행정안전부 승인 및 제정('11. 5.)

옥외광고 심의위원회

※ 학계, 시민단체 등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6인 위촉('08. 11.)

※ 심의위원 POOL 24인 구성(학계, 시민단체 등), 심의 시 8인 선정·운영('11. 1.)

※ 심의위원 POOL 40인 보강(학계, 업계, 시민단체 등), 심의 시 8인 선정·운영('12. 1.)